**「혼외자상속법」**

[법률 제162호, 2015.1.1., 개정]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Legitimacy Act.  **Interpretation**  **2**. In this Act, unless there is something repugnant in the subject or context —  “court” means the High Court or a Family Court;  [Act 27 of 2014 wef 01/10/2014]  “date of legitimation” means the date of the marriage leading to the legitimation, or, where the marriage occurred before 18th May 1934, that day;  “disposition” means an assurance of any interest in property by any instrument whether inter vivos or by will;  “intestate” includes a person who leaves a will but dies intestate as to some beneficial interest in his estate;  “legitimated person” means a person legitimated by this Act;  “will” includes “codicil”.  **Legitimation by subsequent marriage of parents**  **3**.—(1) Subject to this section, where the parents of an illegitimate person marry or have married one another, whether before, on or after 18th May 1934 the marriage shall, if the father or mother of the illegitimate person was or is at the date of the marriage domiciled in Singapore, render that person, if living, legitimate from 18th May 1934 or from the date of the marriage, whichever last happens.  [Act 16 of 2013 wef 01/10/2014]  (2) Nothing in this Act shall operate to legitimate a person unless the marriage leading to the legitimation was solemnized a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pealed Christian Marriage Ordinance [Cap. 37, 1955 Ed.] or of the Civil Marriage Ordinance [Cap. 38, 1955 Ed.] or unless that marriage was registered or deemed to be registered under the Women’s Charter [Cap. 353].  (3) The legitimation of a person under this Act does not enable him or his spouse, children or remoter issue to take any interest in property save as hereinafter expressly provided in this Act.  (4)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Schedule shall have effect with respect of the re-registration of the births of legitimated persons.  **Declarations of legitimacy of legitimated persons**  **4.**—(1) A person claiming that he or his parent or any remoter ancestor became or has become a legitimated person may, whether domiciled in Singapore or elsewhere, and whether a citizen of Singapore or not, apply to the court by originating summons for a decree declaring that the applicant is the legitimate child of his parents, or that his parent or remoter ancestor was legitimate, and th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that application and to make such decree declaratory of the legitimacy or illegitimacy of such person as to the court may seem just; and that decree shall be binding to all intents and purposes on the Government and on all persons whomsoever.  [42/2005 wef 01/01/2006]  [Act 27 of 2014 wef 01/10/2014]  (2) Every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pported by an affidavit verifying the facts alleged in the same, and by such proof of the absence of fraud and collusion, as the court may by any general rule direct.  [42/2005 wef 01/01/2006]  (3) In all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have full power to award and enforce payment of costs to any person cited, whether that person does or does not oppose the declaration applied for, in case the court considers it reasonable that the costs should be paid.  (4) A copy of every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and of the affidavit in support thereof shall be served on the Attorney-General, who may apply to intervene in the application if he thinks necessary.  [42/2005 wef 01/01/2006]  (5) Where any application is made under this section to the court, the person or persons, if any, besides the Attorney-General as the court thinks fit shall, subject to the rules made under this section, be cited to the proceedings or otherwise summoned in such manner as the court directs, and may be permitted to become parties to the proceedings, and oppose the application.  (6) The decree of the court shall not in any case prejudice any person —  (a) if it is subsequently proved to have been obtained by fraud or collusion; or  (b) unless that person has been cited or made a party to the proceedings or is the heir at law, next of kin, or other real or personal representative of, or derives title under or through, a person so cited or made a party.  (7) No proceedings to be had under this section shall affect any final judgement or decree already pronounced or made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8) The Family Justice Rules Committee constituted under section 46(1) of the Family Justice Act 2014 may make Family Justice Rules for carrying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to effect.  [Act 27 of 2014 wef 01/01/2015]  (9) The Family Justice Rules may, instead of providing for any matter, refer to any provision made or to be made about that matter by practice directions issued for the time being by the registrar of the Family Justice Courts.  [Act 27 of 2014 wef 01/01/2015]  **Rights of legitimated persons to take interests in property**  **5**.—(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 legitimated person  and his spouse, children or remoter issue shall be entitled to take any interest —  (a) in the estate of an intestate dying after the date of legitimation;  (b) under any disposition coming into operation after the date of legitimation,  in the like manner as if the legitimated person had been born legitimate.  (2) Where the right to any property depends on the relative seniority of the children of any person, and those children include one or more legitimated persons, the legitimated person or persons shall rank as if he or they had been born on the day when he or they became legitimated by virtue of this Act, and if more than one such legitimated person became legitimated at the same time they shall rank as between themselves in order of seniority.  (3) This section applies only if and so far as a contrary intention is not expressed in the disposition, and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terms of the disposition and to the provisions therein contained.  **Succession on intestacy of legitimated persons and their issue**  **6.** Where a legitimated person or a child or remoter issue of a legitimated person dies intestate in respect of any of his property, the same persons shall be entitled to take the same interests therein as they would have been entitled to take if the legitimated person had been legitimate.  **Application to illegitimate person dying before marriage of parents**  **7.** Where an illegitimate person dies on or after 18th May 1934 and before the marriage of his parents leaving any spouse, children or remoter issue living at the date of the marriage, then if that person would, if living at the time of the marriage of his parents, have become a legitimated person, the provisions of this Act with respect to the taking of interests in property by, or in succession to, the spouse, children and remoter issue of a legitimated person shall apply as if that person had been a legitimated person and the date of the marriage of his parents had been the date of legitimation.  **Personal rights and obligations of legitimated persons**  **8.** A legitimated person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be under the same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maintenance and support of himself or of any other person as if he had been born legitimate,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provisions of any Act relating to claims for damages, compensation, allowance, benefit, or otherwise by or in respect of a legitimate child shall apply in the like manner in the case of a legitimated person.  **Provisions as to legitimation by extraneous law**  **9**.—(1) Where the parents of an illegitimate person marry or have married one another, whether before, on or after 18th May 1934 and the father of the illegitimate person was or is, at the time of the marriage, domiciled in a country other than Singapore, by the law of which the illegitimate person became legitimated by virtue of the subsequent marriage, that person, if living, shall within Singapore be  recognised as having been so legitimated from 17th May 1934 or from the date of the marriage, whichever last happens, notwithstanding that his father was not at the time of the birth of that person domiciled in a country in which legitimation by subsequent marriage was permitted by law.  (2) All the provisions of this Act relating to legitimated persons and to the taking of interests in property by or in succession to a  legitimated person and the spouse, children and remoter issue of a legitimated person shall apply in the case of a person recognised as having been legitimated under this section, or who would, had he survived the marriage of his parents, have been so recognised; and accordingly this Act shall have effect as if references therein to a legitimated person included a person so recognised as having been legitimated.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untry” includes any part of the British Commonwealth, as well as a foreign country.  **Right of illegitimate child and mother of illegitimate child to succeed on intestacy of the other**  **10**.—(1) Where, on or after 18th May 1934, the mother of an illegitimate child, the child not being a legitimated person, dies intestate as respects all or any of her property, and does not leave any legitimate issue her surviving, the illegitimate child, or if he is dead his issue, shall be entitled to take any interest therein to which he or his issue would have been entitled if he had been born legitimate.  (2) Where, on or after 18th May 1934, an illegitimate child, not being a legitimated person, dies intestate as respects all or any of his property, his mother, if surviving, shall be entitled to take any interest therein to which she would have been entitled if the child had been born legitimate and she had been the only surviving parent.  **Saving**  **11.** Nothing in this Act shall affect the operation or construction of any disposition coming into operation before 18th May 1934 or affect any rights under the intestacy of a person dying before that date. | **약칭**  **제1조** 이 법은 “혼외자상속법”으로 인용된다.  **해석**  **제2조** 이 법에서, 대상과 내용에 달리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을 의미한다.  “준정일”은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혼인날 또는 1934년 5월 18일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그 날을 의미한다.  “처분”은 생존 중 효력있는 문서나 유언장에 의한 재산에 대한 이익의 확약을 의미한다.  “무유언자”는 유언장을 남겼으나 자신의 상속재산의 어떤 수익권에 관하여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인지된 자”는 이 법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유언장”은 “유언보충서”를 포함한다.  **부모의 후속 혼인에 의한 준정**  **제3조** (1) 동조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부모가 혼인을 하거나 서로 혼인을 하였던 경우, 혼인이 1934년 5월 18일 이전, 그날 또는 그 후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혼인 외 출생자의 부나 모가 혼인날 싱가포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한다면, 그 사람에게, 만약 살아있다면, 1934년 5월 18일부터 또는 혼인의 날부터, 또는 둘 중 더 후에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준다.  (2) 이 법의 어떠한 것도 혼인중 출생자가 혼인을 하고 폐지된 기독교 혼인령[법률 제37호, 1995Ed] 또는 시민결혼령[법률제38호, 1955Ed]규정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또는 여성헌장[법률제353호]에 의거해 혼인이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면 혼인으로 인한 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이 법에 의한 준정은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자손이 이하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4) 부칙에 포함된 규정은 인지된 자의 출생의 재등록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인지된 자의 정통성선언**  **제4조** (1) 본인, 부모 또는 직계조상이 된다고 또는 인지된 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싱가포르나 그 밖의 지역에의 거주여부와 싱가포르의 시민권자인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신청자가 부모의 법적인 자녀임을 선언하는 또는 부모나 먼 조상이 법적인 자녀라는 선언을 하는 명령을 요청함으로써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의 심리와 결정권한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녀인지 또는 비법적인 자녀인지를 가리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그 명령은 정부 및 모든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구속한다.  (2) 법원은 어떠한 일반규칙에 의해서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에 따른 모든 신청은 주장하는 사실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아피다빗과 사기나 공모가 없다는 증거로 보충된다.  (3) 이 조의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경우, 인용된 사람들이 신청된 선언에 반대하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그 사람들에게 비용의 지불을 부여하고 집행할 전권을 갖는다.  (4) 이 조에서 모든 신청 및 이를 보충하는 아피다빗의 사본은 필요한 경우 신청에 개입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게 송달된다.  (5) 동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람은,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법무부장관 외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관하여, 소송에 인용되거나 혹은 법원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소환되며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으며 신청을 반대할 수 있다.  (6)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를 침해하지 않는다.  (a) 사기나 공모로 얻어진 것으로 후에 증명된 경우, 또는  (b) 소송에서 당자사로 인용되거나 당사자가 되었던 또는 법률상 상속자, 근친, 또는 다른 가계의 상속자 또는 유언집행인이었거나 당사자로 인용되거나 당사자가 됨으로써 이를 통해 타이틀을 얻는 경우  (7)이 조에 의하여 제기된 어떠한 소송도 이미 선고된 또는 관할 법원에서 만들어진 최종결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2014가족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가족사법규칙위원회는 이 조에 효력이 있는 규정에 대한 가족사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9) 가족법규칙은,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에, 해당 문제에 관하여 가정법원 등록관에 의해 당시 발행되는 업무지시로 제정된 또는 제정될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할 인지된자의 권리**  **제5조** (1) 동법의 규정에 대하여, 인지된 자 및 그 배우자, 자녀 또는 증손자는 인지된 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각호에 대한 이익을 취할 자격이 있다.  (a) 준정일 이후 사망하여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속재산  (b) 준정일 이후 발효되는 처분  (2)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녀의 친족순위에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명 이상의 인지된 자를 포함하는 경우, 인지된 자는 그 또는 그들이 이 법에 의해 인지된 날에 출생한 것과 같이 순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가 동시에 한 명 이상 이루어진 다면, 그들은 서로의 나이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3) 동조는 오직 재산의 양도시 반대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양도조건과 그에 포함된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발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재산에 대한 인지된 자 및 그들의 자손의 승계**  **제6조** 인지된 자나 그 자녀 또는 그 증손자가 재산과 관련하여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적인 자로 인지되었다면 동일한 사람들이 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그에 동일한 이익을 취할 자격을 갖는다.  **부모의 혼인 이전에 사망한 혼외자에 대한 적용**  **제7조** 혼외자가 1934년 5월 18일에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혼인일에 생존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증손자를 남기고 그의 부모님의 혼인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은, 그의 부모님의 혼인 일에 생존하였다면, 적법한 자녀가 되며, 상속에 의해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관한 동법의 규정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인지된 자의 증손자는 그 사람이 인지된 것과 같이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혼인날이 인지된 날인 것으로 적용된다.  **인지된 자의 인격권과 의무**  **제8조** 인지된 자는 자신에 대한지원과 관련하여 또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동법의 규정에 대하여, 법적인 자녀에 의한 또는 법적인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수당, 혜택 또는 기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모든 법규정은 인지된 자의 경우의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추가적 법률에 의한 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1) 혼인외자의 부모가, 1934년 5월 18일 또는 그 전후에 혼인하거나 혼인하였고 혼인외자의 부가 혼인당시 싱가포르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 후속 혼인으로 혼인외자가 인지되는 법에의해, 그 사람은, 만약 생존해 있다면, 그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출생당시에 후속 혼인으로 인한 인지가 법률상 인정되는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34년 5월 17일에 또는 혼인한 날부터, 둘 중 후에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인지된 것처럼 싱가포르 내에서 인정된다.  (2) 인지된 자와 관련이 있고 인지된 자, 인지된 자의 배우자, 자녀 및 증손자에 대한 상속에 의한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동법의 모든 규정은 이 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지된 사람 또는 그의 부모님의 혼인 시 생존하고 있었다면, 인지되었었던 사람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인지된 사람에 대한 참고인은 인지된대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동법에 따라 효력이 있다.  (3) 동조의 목적상, “국가”는 영연방국가 뿐만아니라 외국도 포함한다.  **다른 사람의 유언없는 재산의 상속에 대한 혼외자와 혼외자 모의 권리**  **제10조** (1) 1934년 5월 18일 또는 그후, 혼외자의 모, 그 자녀는 법적인 자녀가 아니며, 그녀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고 그녀의 생존시 어떠한 법적인 자녀도 남기지 않은 경우, 혼외자 또는 그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자녀가, 만약 그가 법적인 자녀로 출생하였다면 그 또는 그의 자녀가 자격을 가졌을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할 자격을 갖는다.  (2) 1934년 5월 18일 또는 그 이후,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가 그의 재산전부나 일부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모가, 만약 생존해 있다면, 만약 그 아이가 적법하게 출생을 하였고 그녀가 유일한 생존 부모였다면 그녀가 자격이 있었을 것에 대한 이익을 취할 자격을 갖는다  **유보**  **제11조** 동법에 그 어떤 것도 1934년 5월 18일 이전에 발효하는 처분의 집행이나 해석에 또는 그 날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언없는 재산에 따른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